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1일, 민형배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민형배의원)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 지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나아정)

(1) 재난 피해자 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중양대책본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양합동지원센터’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중양대책본부 차
원에서 재난 피해를 통합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각 개정안은 설치·운영 주체를 모두 중양대책본부장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명칭,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하여는 각기 달리 정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주체	중양대책본부장			
명칭	통합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지원 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	
지원 범위	·재난 수습상황 전달 ·사망자·부상자·실종자 신원확인 ·비상물품전달 등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 행정처리 ·사망자 신원확인 및 장례절차 지원 ·재난 수습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사망자 신원확인 ·비상물품 전달 등

첫째, 명칭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통합지원센터’, 임호선의원안은 ‘현장지원센터’, 백선희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은 ‘유가족통합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지원센터가 ‘통합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점과 현행법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명칭을 고려할 때, 중앙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하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에 ‘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될 경우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두 차례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에서 ‘중앙합동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명칭을 ‘중앙합동지원센터’로 수정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와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임호선의원안은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백선희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복구, 임시주거시설 및 식사 지원 등 직접적인 구호 활동 외에도 금융, 보험, 법률상담, 통역,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사망자가 아닌 피해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재난의 경우에도 통합된 지원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피해자 및 유가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김병기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원확인, 재난수습 상황전달, 비상물품전달, 지원금 신청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으로,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신설

현행법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피해 회복 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재난피해의 회복수준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관한 김병기의원안과 민형배의원안의 차이점 및 자료 요청 권한 신설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태조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로, 민형배의원안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의 복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목적을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지원’에 국한시키기 보다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둘째,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는 재난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마련 후 법정 조사업무로 추진하게 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추가 분석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수준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신원 확인, 피해 전후의 경제·사회·보건·심리상황 및 피해지원 내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조사데이터의 구축·분석·관리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

는 전문 기관에서 조사 업무 수행 및 결과 발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유가족전담공무원 운영 근거 신설

개정안은 특히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신속한 관련 업무 지원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족전담공무원이 유가족에게 ①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②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③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유가족전담공무원”의 법제화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유가족전담공무원의 운영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① 재난 발생 시 기존 공무원 인력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② 기존 인력과는 별도의 전담 인력을 추가로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먼저, 유가족전담공무원을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시행 예정인 법률의 규정과 그 효과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25일에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및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역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어 2025년 10월 2일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공무원 등을 지역대책본부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유가족전담공무원을 기존 공무원 인력이 아닌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를 살펴보면, 재난은 그 특성상 발생 시기와 빈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별도의 상근 인력으로 유지할 경우 효율적인 인력 활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유가족전담 인력을 두는 것은 공무

원 정원 배정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공무원 정원 관리 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이 유가족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②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③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미 해당 매뉴얼 및 업무 편람 등에 장례식장 전담 인력 배치,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근무 요령 등 유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매뉴얼에서 유가족전담공무원 행동매뉴얼을 별도로 분리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재난의 수습·관리에 관한 업무의 체계화 및 연계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